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(대표발의: 한 선 미 의원)

의안 번호	26-1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6. 1. .

발의자: 한선미,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
김승수, 백남환, 오옥자, 차해영,
최은하

1. 개정이유

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,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의 변경

나.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
다.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라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마.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바.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)

사. 관련 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아.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)

- 자. 위원회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안 제9조)
- 차.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 운영,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안 제13조)
- 카. 사업비의 지원(안 제14조)
- 타.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파. 교육 및 홍보, 비밀준수 의무 등(안 제16조~안 제17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: 2026. 1. 9. ~ 1. 14.

- 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
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중
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
조에 따른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관계 법
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
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
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

관한 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
2. 여성폭력 예방 교육·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3.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련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
2.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4.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
사항
5.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
사항
6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
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
2.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

가.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
나.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

다. 초·중·고등학교, 교육청 등 교육기관

라. 경찰, 검찰, 법원 등 경찰·사법 관련 기관

3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임기 등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해촉·제척·기피·회피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
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비의 지원)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2차 피해방지)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6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,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,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

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는 이 조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지역연대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(약칭: 여성폭력방지법)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폭력”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.
2. “여성폭력 피해자”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3. “2차 피해”란 여성폭력 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.

(생략)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(2차 피해 방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여성폭력 예방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20조(홍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(생략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이유진
연 락 처	02-3153-8926